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42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센터)를 설치하여 충청북도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일상회복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현 실태를 반영하여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관계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용어의 뜻을 구체화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예산 및 인력확보를 추가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에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등을 추가하고 계획에 실태 조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및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피해 신고 체계 마련 규정을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2021년 7월 9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의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6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신종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했음
- 이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

기구 설치, 허위영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일상회복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자구수정 내용추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구수정 내용추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내용추가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내용추가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내용추가
제6조(피해자 지원)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개정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자구수정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신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자구수정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	제목수정 일부신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자구수정

※ 현행 조례의 2/3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함

- 안 제1조는 목적 조문으로 현행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간존엄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안 제2조는 근거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뜻을 추가 및 보완하여 근거법령과 용어를 통일함

- 제1호나목과 다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합성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의 뜻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관련 사항(4호)과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의 유통 방지·차단·삭제 등의 대책(5호)을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와 추진 실적의 반영 등을 추가함
  - 제2항제4호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합성영상등의 실태 파악 및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등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함
  - 제2항제5호의 영상 등의 차단 및 삭제 관련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차단·삭제 등의 내용이 타당함  
(관련 사항은 제6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 제3항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9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
  - 제4항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시행계획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위해 적절함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 후단에 실태조사의 주요 포함요소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타당함

- 또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함

○ **안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 조 제목을 피해자 지원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개정하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음
- 제1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 \* 제1호에는 상담을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을 추가하고,
  - \* 제4호에서 ‘피해자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신상정보’를 포함해 딥페이크 영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 \* 제6호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
  - \* 제1항은 전반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해 내실있고 충실한 사업내용을 담은 것으로 적절하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함

○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로 센터의 기능(실태조사, 각종 사업, 신상정보 및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특히, 제3항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실효성을 갖추고 있음

- 안 제9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 대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만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이 함께 조치해야 할 범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함
- 안 제10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 제목을 '2차 피해 방지'에서 '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로 개정함
  - 제1항에 디지털성범죄물로부터 충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범죄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함
- 그 밖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6월 4일로 규정한 것은 근거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문 및 조항의 시행일(2025. 6. 4.)을 따른 것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출범과 피해 정보 삭제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함

- (법적합성 및 시의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덤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및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음란행위와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치 결과
5.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에 관한 유통방지, 차단 및 삭제 등 제반대책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기관,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조치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3.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상정보 및 관련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 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생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생략)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 ③ (생략)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본조신설 2024. 12. 3.]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 ⑦ (생략)

[제목개정 2020. 6. 2.]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 ③ (생략)

[본조신설 2021. 3. 2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제4조의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

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3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4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신고체계 구축 등 일부 사업에서 비용 수반이 예상되지만,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워 제외사유서를 제출함